[별지 제16호서식] <개정 2023. 4. 26.>

취업지원 종료 통지서

수급자 (수급자격자)	성명
	주소

행정처분 내용	종료일	년 월 일
	종료 이유	[]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끝난 경우 []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[]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 또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[]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않는 경우 []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[]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이 최종 회차인 경우 []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마지막 지급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 []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경우
	(구제적 사유)	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지원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

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

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

1.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2.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·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자() 전화번호() 팩스번호(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(80g/㎡)]